

중계기위원회 운영규정

제 1 조 (목 적) 본 위원회의 목적은 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(이하 “연맹”)의 무선통신중계기(이하 “중계기”) 운용 및 관리와 아마추어무선통신의 기술개발 및 효율적인 업무관리에 있다.

제 2 조 (명 칭) 본 위원회의 명칭은 “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중계기위원회”라 칭한다.

제 3 조 (위원회 설치 및 근거)

- ① 본 위원회는 연맹 무선국관리규정 제36조에 정한 중계기위원회 외에 각 지역본부에 관련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② 본 위원회는 연맹의 무선국관리규정 제34조 내지 제37조에 규정된 사항을 따른다.
- ③ 본 위원회는 무선국관리규정 제4장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를 연맹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.

제 4 조 (위원회의 업무 및 회의)

- ① 본 위원회의 업무는 연맹의 주파수 활용도에 따른 연구와 KARL 밴드플랜의 중계기 운용주파수 조정과 개.폐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위원의 구성 및 임명 무선통신기기의 연구와 포괄적인 기술정책연구 업무를 한다.
- ② 본 위원회는 타 위원회와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 할 수 있으며 관련 업무 및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.
- ③ 본 위원회는 위원장이 다음에 해당될 시 소집하되 15일 이전에 각 위원에게 공고한다.
 1. 지역본부에서 중계기 개설, 증설, 이전, 신청(기기변경 포함)이 있을 시
 2. 중계기주파수의 분쟁 및 혼신(간섭)이 접수 될 시
 3. 연맹 및 정부에서의 중계기주파수 재배정 및 이전설치의 사유 발생 시
 4. 기타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

제 5 조 (위원의 구성 및 임명)

- ① 본 위원회의 구성은 이사장, 담당이사, 위원장 각1인과 해당본부의 중계기위원으로 구성하되 중계기 10국 이상의 본부는 2명으로 한다.
- ② 위원장은 이사장을 당연직으로 하며, 위원은 위원장이

해당분야 전문가를 임명한다.

제 6 조 (위원의 임기 및 징계)

-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보궐 위원(장)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고, 새로이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가장 최근에 임명된 위원의 잔임 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한다.
- ② 이사장은 위원장 및 위원에게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임 및 징계할 수 있다.
- ③ 위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에 의무적 참여를 하여야 하며 불참 시 그 사유서를 위원장에게 10일 이내 제출하며, 징계 시 무기명 비밀로 결정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한다.

제 7 조 (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)

- ① 위원장은 연맹에서 필요시 업무에 따라 담당이사와 협의하여 이사회에 보고 또는 건의를 할 수 있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으로 하여금 각 지역본부의 소 위원회의를 주관하게 하여 각 지역본부의 의견을 수시로 파악한다.
- ③ 본 규정에 없는 조항은 상의 규정 및 사회 통념상 규정에 따른다.

부 칙

- ①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후 즉시 시행한다.
- ② 2013. 12. 14. 중계기/기술정책위원회 명칭을 통신기술 위원회로 변경.
- ③ 2017.5. 13. 통신기술위원회를 중계기위원회로 명칭 변경하며, 제5조 제①항, 제②항 개정.